

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(본회의 심의 결과)

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개정안 중 부칙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3년마다 시장이 지원 연장을 논의 검토한다.
- ③ 시장은 연장 협의 시 LH 등 책임있는 관계기관이 분담하도록 노력한다.